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 개정

1. 개정이유

「공무원 제안규정」, 「국민 제안규정」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,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·기피·회피 기준을 마련하며, 심의회 운영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 제안뿐만 아니라 국민 제안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「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」으로 변경
- 나.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규정·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에 근거조항을 마련
- 다. 제안이 접수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,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
- 라. 제안 심의회 운영 기준을 구체화 하고, 심사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기준 신설 및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